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및 환경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고,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재배정하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4급 1명)을 직급 하향(4급 또는 5급) 조정하고, 환경부에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난개발지역 친환경 복원 및 개발을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야생동물의 검역시행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홍수취약 지방하천 수위관 측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정책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환경건강연구부·기후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환경기반연구부를 기후탄소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건강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로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근로자의 보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8급 1명), 야생생물전과정관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

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폐지하고, 환경분야 국제 협약·협상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강화 등을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에 2028년 2월 24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환경협약팀과 국제개발협력팀을 신설하며, 업무집중 여건조성을 위하여 환경부에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3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3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 6급 2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하며,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에 6급 1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하고,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에 6급 1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0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비상안전담당관”을 “비상안전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제환경협약팀 및 국제개발협력팀”으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3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⑪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 분야 협약과 관련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2. 환경 분야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 환경 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5. 환경 분야 국제회의의 개최·참가 지원

6. 환경 분야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9. 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의 지원 및 관리

⑫ 국제환경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환경·지속가능 발전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환경·지속가능 발전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⑬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기획 및 관리

2.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3. 국제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국제협력
4. 지구환경금융(GEF)에 관한 사항
5.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탄소시장에서 발급된 감축실적 등록·이전·처분 등 국제감축 실적 관리
7. 환경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8.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환경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제6조제6항 중 “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기후적응과·국제협력과·기후변화국제협력팀·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대기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을 “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기후적응과·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대기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으로, “기후전략과장·기후경제과장·기후적응과장·국제협력과장·녹색전환정책과장·녹색산업혁신과장·녹색기술개발과장·통합허가제도과장”을 “기후전략과장·기후경제과장·기후적응과장·녹색전환정책과장·녹색산업혁신과장·녹색기술개발과장·통합허가제도과장”으로, “수

석전문관으로,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및”을 “수석전문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제7조의2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이행 총괄

제7조의2제3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를 “야생생물에 관한 국제협력, 국제거래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생물자원관법인”으로 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20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2호(중전의 제20호) 중 “정책(화학물질, 생활환경,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을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강영향조사”를 “손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4호 중 “과불화합물(PFCs)”을 “과불화화합물(PFAS)”로 하며,

같은 항 제30호를 삭제한다.

20.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1.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탄소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통합
환경관리연구과·기후국토환경연구과 및 환경표준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농도 상시 측정·조사 및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2. 온실가스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3.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기후위기적응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탄소규제 관련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 조사·연구, 국제
협력기구와 상호인정협정 및 인정기구 운영

6. 기후·대기 통합모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 관련 연구·지원

8. 국가간 온실가스 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9.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10. 그 밖에 기후탄소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항

④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빌리티 배출가스·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
2. 모빌리티 배출가스·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3. 모빌리티 배출가스·온실가스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4. 모빌리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관한 사항
5. 모빌리티 배출가스 수시검사·결합확인검사 및 부품결합보고에 관
한 사항
6.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 및 수시검사·저감효율 확
인검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 품질관리 및 탄소중립연료에 관한 조
사·연구
8. 모빌리티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

화 협력 추진

⑤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을위한 기존 대기질·수질의 오염상태 조사 등 관련 조사·연구
2.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3.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의 마련·보급 및 개선
4. 최적가용기법 관련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5.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및 최대배출기준 마련에 관한 조사·연구
6. 최적가용기법 마련에 필요한 기술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연구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⑥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추적·평가에 관한 연구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3. 환경계획을 위한 공간환경정보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자연경관 보전·관리 및 경관심의 지원에 관한 연구
5.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각종 지표와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6.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7.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조사·연구

⑦ 환경표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2. 환경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3. 환경시험·분석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4.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도 운영
5.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7. 환경분야 연구개발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준 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대기공학연구과·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8.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 및 오염도 조사·연구
9.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연구
10.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1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 공동 조사·연구
13.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관리

리

1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성능인증기준 확인검사
15.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4.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원·악취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6.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7.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연구 및 위원회 운영
8.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세대 감시기법 개발

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관리
2. 국가 대기질 예보·정보·속보 등의 생산
3. 대기질 예보기술 및 예보모델의 개발·개선
4. 국가대기질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국가 대기질 예보를 위한 대기오염 및 기상 등 관련 자료의 수집 · 분석

6.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7. 국가 대기질 예보 관련 국내 · 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⑥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 · 처리 · 보존 및 배포

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위성자료 처리 · 분석 기술 개발 및 개선

4. 환경위성 자료 지상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

5. 환경위성 자료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 · 기후변화 관련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국내 · 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 · 분석 · 활용

10.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 · 외 협력

11. 환경위성 및 온실가스 위성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물환경연구부에 한강통합물환경센터 · 낙동강물환경센터 · 금강물환경센터 · 영산강물환경센터 · 수자원연구과 및 물이용연구과를 두되,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 낙동강물환경센터장 · 금강물환경센터장 · 영산강물환경센터장은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자원연구과장 및 물이용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에 관한 연구

2. 수질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수질오염사고 대응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 · 연구

5.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델링에 관한 연구

6. 유량 · 방사능측정분야 한국산업표준 제 · 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7. 국가 물관리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8.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 · 연구

9.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 · 연구

10. 한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 · 연구

12.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 · 연구

13. 한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

· 연구

14. 수계의 환경생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15.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낙동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연구

3. 낙동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낙동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5.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

6. 낙동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7. 수질의 관리를 위한 미량유해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⑤ 금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연구

3. 금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금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5.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

6. 금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7.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8. 중장기 물순환 목표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⑥ 영산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연구

3. 영산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산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5.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

6. 영산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7. 하수배출특성 및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8.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연구

⑦ 수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

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에 관한 연구

3. 환경생태유량 산정 및 확보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조사·연구

5. 수생태계 변화 예측과 유역 및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6.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7.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8.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 운영과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전국 수질오염원정보의 조사 및 검증

10.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

11. 가축분뇨와 농경지 양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에 관한 조사·연구

⑧ 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3.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생태독성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4. 먹는샘물·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5.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7.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9.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10. 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생성·분해·이동·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11. 먹는물·수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

에 관한 조사·연구

12. 상하수도·수질·미생물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13. 수처리제 자가기준·규격 인정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업무

14. 먹는물 수질 및 수처리제·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건강연구부내 환경보건연구과·환경위해성연구과·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및 생활환경연구과를 두되, 환경보건연구과장·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및 생활환경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및 건강피해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3.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건강영향 빅데이터 활용 연구

4.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6. 인체·생물 등 환경시료를 이용한 장기 진단지표의 개발 및 환경오염 상태에 관한 조사·평가
 7.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평가
 8.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조사·평가
 9. 환경역학조사의 실시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10.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11. 환경유해인자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12. 인체·생물 등 환경시료의 확보·저장·활용을 위한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13. 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14.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및 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3. 허가·제한·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연구
 4.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5.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舉動)에 관한 조사·연구

- 구
6. 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7.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
 8.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9.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⑤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5.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6.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7.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
 8.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연구 협력사업
- ⑥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조사·연구
4. 자연발생식면 영향조사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소음진동 배출원 발생특성 평가 및 저감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6.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 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7. 건설기계·타이어 소음 및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실내공기질·빛공해 및 소음·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환경에너지연구과·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각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환자원의 흐름 및 환경부하 분석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등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6.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 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7. 폐기물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8. 폐기물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9.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및 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회수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환경에너지 분야 제반 기술·성능 평가 및 효율 향상 등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가스 특성 조사 및 포집·저장·이용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환경에너지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⑤ 미래폐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 등(이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이라 한다)의 발생특성·성상에 관한 연구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
3. 중간가공폐기물의 순환이용성 확대에 관한 조사·연구
4.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관리·발생 저감 및 순환성 향상에 관한 연구
5. 대체 플라스틱 제품 안전성 평가 및 관련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연구
6.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
9. 바젤협약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3.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4. 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5.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6. 토양·지하수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연구

7. 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8. 토양·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토양·지하수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연구
10.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의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
11. 토양·지하수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43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629”를 “632”로, 일반직계 “623”을 “626”으로, 고위공무원단 “15”를 “16”으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을 “11”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6”을 “25”로, 서기관·과학기술서

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7”을 “29”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4”를 “96”으로, 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31”을 “29”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29”를 “632”로, 일반직 계 “623”을 “626”으로, 고위공무원단 “15”를 “16”으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을 “11”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6”을 “25”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7”을 “29”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9”를 “111”으로, 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31”을 “29”로 한다.

별표 8 중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6”을 “35”로,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0”을 “34”로,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8”을 “7”로, 공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9”를 “7”로 한다.

별표 9 중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7”을 “36”으로,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2”를 “36”으로,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

는 환경연구관 “8”을 “7”로, 공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9”를 “7”로 한다.

별표 10 일반직 계 33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를 신설하며, “고위공무원단 1”를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를 삭제한다.

별표 10의4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32”를 각각 “73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8”을 “3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27”을 “12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1”을 “102”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33”을 각각 “73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7”을 “29”로,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30”을 “128”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4”를 “105”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7”을 각각 “346”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을 “11”로,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57”을 “56”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4”를 “53”으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9”를 각각 “348”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0”을 “59”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75”를 각각 “177”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 “3”을 “2”로, 시설주사보 “6”을 “8”로 한다.

별표 16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75”를 각각 “177”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5”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항공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를 삭제, 시설주사보 “6”을 “8”로 한다.

별표 17 행정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심사관) 8”를 삭제한다.

별표 17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7”을 각각 “119”로, 4급 이하 “114”를 “116”으로 한다.

별표 21 제7호를 삭제한다.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환경부령 제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7항 및 별표 21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환경협약팀 및 국제개발협력팀은 2028년 2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환경협력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제환경협약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보좌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 --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 -----.
③ 정책기획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 ----- 제21호----- ----- -----.
<신 설>	④ 국제협력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3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	⑤ ----- -----

개혁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⑨ (생략)

<신 설>

-- 비상안전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환경협약팀 및 국제개발협력팀-----
-----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 ----.

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⑪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 분야 협약과 관련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2. 환경 분야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 환경 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 · 교류에 관한 사항
5. 환경 분야 국제회의의 개최 · 참가 지원
6. 환경 분야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9. 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의 지원 및 관리
- ⑫ 국제환경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환경·지속가능 발전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

<신 설>

- 괄·조정
7. 환경·지속가능 발전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⑬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기획 및 관리
 2.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3. 국제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국제협력
 4. 지구환경금융(GEF)에 관한 사항
 5.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탄소시장에서 발급된 감축실적 등록·이전·처분 등 국제감축실적 관리
 7. 환경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8.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u>지원을 위한 환경 분야 온실 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u>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 ⑤ (생략)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후탄소정책실에 <u>기후전략 과·기후경제과·기후적응과· 국제협력과·기후변화국제협력 팀·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 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 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대기 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 및 생 활환경과를 두며, 기후전략과장 ·기후경제과장·기후적응과장 ·국제협력과장·녹색전환정책 과장·녹색산업혁신과장·녹색 기술개발과장·통합허가제도과 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 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기환경 정책과장·대기미래전략과장· 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과장 및 생활환경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변화국제 협력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은 과</u>	<u>⑥ -----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기후적응과·녹 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 ·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 도과·환경교육팀·대기환경정 책과·대기미래전략과·대기관 리과·교통환경----- ----- 기후전략과장 ·기후경제과장·기후적응과장 ·녹색전환정책과장·녹색산업 혁신과장·녹색기술개발과장· 통합허가제도과장----- ----- ----- ----- ----- 수석전문관으로, ----- -----</u>

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 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 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⑨ (생략) ⑩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된 국내 제도의 수립 지 원 및 협조 2.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 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 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참가 지원 6.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 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 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녹색기후기금 관련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⑪ <u>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u> 2. <u>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u> 3. <u>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u> 4. <u>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5. <u>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6. <u>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⑫ (생 략) ⑬ <u>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5. (생 략) 6. <u>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u> 7.·8. (생 략)	<삭 제> ⑫ (현행과 같음) ⑬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8. (현행과 같음)		9. <u>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기관의 지원 및 관리</u> 10. ~ 16. (생 략) ⑭ ~ ⑳ (생 략)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①·② (생 략) ③ <u>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7. (생 략) 8. <u>생물다양성·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9. ~ 12. (생 략) 13. <u>자연보전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14.·15. (생 략) ④ <u>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복원에 관한 사항</u> 2. <u>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3. <u>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u>	9. <u>환경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 육성 및 지원</u> 10. ~ 16. (현행과 같음) ⑭ ~ ⑳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자연보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7. (현행과 같음) 8. <u>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이행 총괄</u> 9.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15. (현행과 같음) ④ -----. 1. <u>멸종위기야생생물-----</u> 2. <u>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3. ----- <u>야생생물에 관한 국제협력, 국제거래 등-----</u>
--	---	--	---	---

4. 생태계위해우려종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보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6.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1.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2. 삭 제	
11.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삭 제>	3. 환경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삭 제>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1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4. 생물자원관법인----- -----	7.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7. ----- 손해조사-----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보건국) ①·② (생 략)	제9조(환경보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 -----.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3. (현행과 같음)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1. ~ 23. (생 략)	24. 과불화화합물(PFAS)----- ----- -----
<신 설>	20.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4. 과불화화합물(PFCs), 브롬화 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	
<신 설>	21.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		
20.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화학물질, 생활환경, 환경성 질환	22. ----- -- 정책---		

시행	--	구
25. ~ 29. (생략)	25. ~ 29. (현행과 같음)	2. 온실가스 분야 환경오염공정
30.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	<삭제>	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
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		정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		3.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기후위
31.·32. (생략)	31.·32. (현행과 같음)	기적응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구
<신설>	제12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
	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지정·관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리에 관한 사항
	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5. 국제탄소규제 관련 탄소배출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량 산정 및 검증방법 조사·연구,
	나등급으로 한다.	국제협력기구와 상호인정협정 및
	② 기후탄소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	인정기구 운영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통합환경관리연구과·	6. 기후·대기 통합모델·시스템의
	기후국토환경연구과 및 환경표준연구과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	7.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 관련
	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연구·지원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8. 국가간 온실가스 이동·확산에
	③ 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한 조사·연구
	분장한다.	9.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1. 온실가스 농도 상시 측정·조사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및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수립에 관한 연구
		10. 그 밖에 기후탄소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

④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빌리티 배출가스·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2. 모빌리티 배출가스·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3. 모빌리티 배출가스·온실가스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모빌리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관한 사항
 5. 모빌리티 배출가스 수시검사·결함확인검사 및 부품결함 보고에 관한 사항
 6.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 및 수시검사·저감효율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 품질관리 및 탄소중립연료에 관한 조사·연구
 8. 모빌리티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 ⑤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을위한 기존 대기질·수질의 오염상태 조사 등 관련 조사·연구
 2.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3.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의 마련·보급 및 개선
 4. 최적가용기법 관련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5.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및 최대배출기준 마련에 관한 조사·연구
 6. 최적가용기법 마련에 필요한 기술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연구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⑥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추적·평가에 관한 연구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3. 환경계획을 위한 공간환경정보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자연경관 보전·관리 및 경관심의 지원에 관한 연구
 5.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각종 지표와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6.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7.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조사·연구
- ⑦ 환경표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2. 환경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3. 환경시험·분석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4.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 정도관리 제도 운영
5.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7. 환경분야 연구개발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환경위해성연구과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두되, 환경보건연구과장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대기공학연구과·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

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2.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4.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5. 환경보건지표의 개발을 위한 연구 6.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7.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8. 환경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 9. 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10. ~ 20. 삭 제 21.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구 2. 대기오염분야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8.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 기상 및 오염도 조사·연구 9.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연구 10.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1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1.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3. 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5.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 6.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舉動)에 관한 조사·연구 7. 허가·제한·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연구 8.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 시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 9. 잔류성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분석방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⑤ 삭 제 ⑥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 공동 조사·연구 13.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관리 1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성능 인증기준 확인검사 15.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4.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
---	---	--	--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4.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
6.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연구 협력사업

- 32조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원
 - 악취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6.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7.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연구 및 위원회 운영
8.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세대 감시기법 개발
- 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관리
 2. 국가 대기질 예보·정보·속보 등의 생산
 3. 대기질 예보기술 및 예보모델의 개발·개선
 4. 국가대기질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국가 대기질 예보를 위한 대기오염 및 기상 등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6.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7. 국가 대기질 예보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⑥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및 배포
 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위성자료 처리·분석 기술 개발 및 개선
 4. 환경위성 자료 지상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
 5. 환경위성 자료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기후변화 관련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분석·활용		2. 대기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 방법 제·개정에 관한 조사· 연구	로 보한다.
	10.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외 협력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 오염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③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환경위성 및 온실가스 위성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삭 제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에 관한 연구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 기후 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 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 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제14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 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 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 구	2. 수질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② 기후대기연구부에 대기환경 연구과·지구환경연구과·대기 공학연구과·대기질통합예보센 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 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 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 한다.	② 물환경연구부에 한강통합물 환경센터·낙동강물환경센터· 금강물환경센터·영산강물환경 센터·수자원연구과 및 물이용 연구과를 두되, 한강통합물환경 센터장·낙동강물환경센터장· 금강물환경센터장·영산강물환 경센터장은 공업연구관·농업 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 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자 원연구과장 및 물이용연구과장 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		6.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 석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질오염사고 대응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7.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평가 에 관한 조사·연구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8.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 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 료의 분석·관리	5.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 립을 위한 모델링에 관한 연 구
			9.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 기상의 관측 및 조사·연구	6. 유량·방사능측정분야 한국 산업표준 제·개정 및 국제표 준화 협력 추진
			10.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연구	7. 국가 물관리통합정보망의 구 축 및 운영
			11. 삭 제	8.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 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 구
			12. 고도별 대기오염물질의 특 성에 관한 조사·연구	9.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 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 사·연구
			1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10. 한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1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연구 16.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관리 17. 삭 제 18. 그 밖에 기후대기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대기 통합모델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3.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의 운영 4. 삭 제 5. 지구온난화 관련 물질의 측	영에 관한 사항 11. 한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12.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 13. 한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14. 수계의 환경생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15.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낙동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연구 3. 낙동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낙동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	정 및 조사·연구 6.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 관련 연구 7. 오존층 파괴 관련 환경변화 및 대응방안의 연구 8.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관련 연구·지원 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구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기후변화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11. ~ 20. 삭 제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삭 제 3.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삭 제 5.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 제 7.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연구 5.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 6. 낙동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7. 수질의 관리를 위한 미량유해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⑤ 금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연구 3. 금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금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5.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 6. 금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	--	---	--

에 관한 연구 8.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9. 삭 제 10.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원·악취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11.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12.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연구 및 위원회 운영 13.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세대 감시기법 개발 ⑥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관리 2. 국가 대기질 예보·정보·속보 등의 생산 3. 대기질 예보기술의 개선 및 예보 모델의 개발·개선 4. 대기질 통합 분석 및 예보 지	7.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8. 중장기 물순환 목표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⑥ 영산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연구 3. 영산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산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5.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 6. 영산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7. 하수배출특성 및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원시스템의 개발·운영 5. 대기오염 및 기상 측정자료의 수집·분석 6.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7. 대기질 예보의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8.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대국민 전달체계 마련 등 대내외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⑦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및 배포 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위성자료 처리·분석 기술 개발 및 개선 4. 환경위성 자료 지상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 5. 환경위성 자료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연구 ⑦ 수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 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에 관한 연구 3. 환경생태유량 산정 및 확보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조사·연구 5. 수생태계 변화 예측과 유역 및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6.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7.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8.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 운영과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전국 수질오염원정보의 조사
---	--	---	---

6. <u>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및 검증</u>		
7. <u>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u>	10. <u>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u>		
8. <u>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11. <u>가축분뇨와 농경지 양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에 관한 조사·연구</u>		
9. <u>국내·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분석·활용</u>	⑧ <u>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0. <u>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외 협력</u>	1. <u>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u>		
11. <u>차세대 위성 등 후속 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u>	2. <u>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u>		
	3. <u>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생태독성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u>		
	4. <u>먹는샘물·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u>		
	5. <u>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u>		
	6. <u>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u>		
	7. <u>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u>		
		제15조(물환경연구부) ① <u>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u>	8. <u>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u>
			9. <u>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연구</u>
			10. <u>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생성·분해·이동·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u>
			11. <u>먹는물·수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u>
			12. <u>상하수도·수질·미생물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u>
			13. <u>수처리제 자가기준·규격인정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업무</u>
			14. <u>먹는물 수질 및 수처리제·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제15조(환경건강연구부) ① <u>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u>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책 수립을 위한 수질모델 개발 및 수질변화예측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② 물환경연구부에 물환경평가연구과·유역총량연구과 및 물환경공학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환경위해성연구과·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및 생활환경연구과를 두되, 환경보건연구과장·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및 생활환경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6. 인체·생물 등 환경시료를 이용한 장기 진단지표의 개발 및 환경오염 상태에 관한 조사·평가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평가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의 개발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④ 유역총량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조사·평가
2. 수질항목별 수질예보기법의 개발	2.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및 건강피해 현황 등 국민 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1.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9. 환경역학조사의 실시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3. 수질예보를 위한 실시간 수질예측 및 오염저감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건강영향 빅데이터 활용 연구	2.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10.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4. 수질오염사고 대응 독성물질 확산예측 및 방제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3.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제도 및 기술의 검토·연구	11. 환경유해인자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5. 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2. 인체·생물 등 환경시료의 확보·저장·활용을 위한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6.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5.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13. 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7.·8. 삭제		6. 전국수질오염원 정보의 조사 및 검증	14.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9. 국가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대		7. 수질오염물질의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	
		8.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합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	

<u>노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의 조사·연구</u> 9. <u>삭 제</u> ⑤ <u>물환경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u> 2. <u>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 표의 개발</u> 3. <u>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u> 4. <u>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 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u> 5. <u>배출허용기준, 생태독성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u> 6. <u>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 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u> 7. <u>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高 度處理) 및 재이용 기술개발</u> 8. <u>「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 32조제2항에 따른 수질 분야 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 제·개정을 위한 조 사·연구</u>	<u>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u> ④ <u>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u> 2. <u>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및 기법에 관한 조사·연구</u> 3. <u>허가·제한·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연구</u> 4. <u>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u> 5. <u>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舉動)에 관한 조 사·연구</u> 6. <u>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u> 7. <u>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u> 8. <u>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 정에 관한 조사·연구</u> 9. <u>잔류성오염물질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및 관리방안에 관한</u>	9. <u>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 사 결과의 검증을 위한 조사 ·연구</u>	<u>연구</u> ⑤ <u>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u> 2. <u>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u> 3. <u>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연구</u> 4. <u>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u> 5. <u>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u> 6. <u>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u> 7. <u>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 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u> 8. <u>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 사·연구 협력사업</u> ⑥ <u>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u> 1. <u>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및</u>
---	--	--	---

	<u>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u> <u>2.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u> <u>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조사·연구</u> <u>4.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u> <u>5. 소음진동 배출원 발생특성 평가 및 저감방안에 관한 조사·연구</u> <u>6.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 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u> <u>7. 건설기계·타이어 소음 및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u>8. 실내공기질·빛공해 및 소음·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u>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u>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폐자원에너지연구과 및 자연환경연구과를 두되,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u> <u>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순환자원의 이용 확대 및 환경부하 분석·평가에 관한 연구</u> <u>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u> <u>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u> <u>4.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u> <u>5.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u>	<u>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환경에너지연구과·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각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u> <u>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순환자원의 흐름 및 환경부하 분석에 관한 연구</u> <u>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u> <u>3.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u> <u>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등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u> <u>5.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u> <u>6.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효성 기준에 관한 조사·연구</u> <u>7. 폐기물분야 환경오염공정시</u>
--	---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 3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 8.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의 에너지 회수기술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평가 기술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에 관한 연구 5.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및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6. 고형연료제품 등 폐자원에너	협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8. 폐기물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9.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및 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회수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환경에너지 분야 제반 기술·성능 평가 및 효율 향상 등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가스 특성 조사 및 포집·저장·이	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한 연구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 · 3. 삭 제 4. 자연경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5. 자연경관 심의제도 지원에 관한 연구 6. ~ 13. 삭 제 14.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영향에 관한 연구 15.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16.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자연환경에 관한 연구 17. 삭 제 18. 도시 환경재해 예측 평가 및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19.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2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운영 및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용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환경에너지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⑤ 미래폐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 등(이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이라 한다)의 발생특성·성상에 관한 연구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 3. 중간가공폐기물의 순환이용성 확대에 관한 조사·연구 4.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관리·발생 저감 및 순환성 향상에 관한 연구
---	---	---	--

21. <u>환경생태 시료(試料)의 수집</u> · <u>보관 및 환경시료은행의 운영</u> 22. <u>환경시료를 이용한 환경변화 추적 및 장기 진단지표 개발</u> 23. <u>국가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 지원</u> 24. <u>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u> 25. <u>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u> 26. <u>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기준 대기질·수질의 오염상태 조사 등 관련 조사·연구</u> 27. <u>최적가용기법 마련·보급 및 보완을 위한 관련 조사·연구</u> 28. <u>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 등을 위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운영</u>	5. <u>대체 플라스틱 제품 안전성 평가 및 관련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연구</u> 6. <u>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연구</u> 7. <u>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8. <u>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u> 9. <u>바젤협약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u> ⑥ <u>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u> 2. <u>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u> 3. <u>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 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u> 4. <u>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u> 5. <u>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u>	<u>방법에 관한 연구</u> 6. <u>토양·지하수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연구</u> 7. <u>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u> 8. <u>토양·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u> 9. <u>토양·지하수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연구</u> 10. <u>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의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u> 11. <u>토양·지하수분야 한국산업표준 제·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u> <삭 제>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① <u>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임업연구원·기상연구원·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u>환경기반연구부에 생활환경연구과·상하수도연구과·환경</u>
--	--	---

측정분석센터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생활환경연구과장 · 상하수도연구과장 및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의 조사 · 연구
2.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3.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 · 개정에 관한 연구
4.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특성과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조사 · 시험 및 연구
5. 실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6. 공기정화기술 연구
7. 소음 · 진동기준에 관한 조사

· 연구

8. 소음 · 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 · 연구
 9. 소음 · 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 · 연구
 10. 소음 · 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11. 소음 · 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 · 연구
 12. 빛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에 관한 조사 · 연구
 13. 그 밖에 환경기반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상하수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 · 연구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 · 연구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 · 연구
 4. 먹는물 수질, 수처리제, 정수

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5.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제·개정에 관한 연구

6.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7. 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 생성·분해·이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하수배출특성 및 하수 방류 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14.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연구

⑤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3. 환경측정기기(자동차 및 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
사

4. 폐기물, 잔류성오염물질 등 환경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5.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 32조제2항에 따른 환경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3.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 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4. 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연구 5. <u>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연구</u> 6. <u>토양 및 지하수수질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연구</u> 7. <u>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u> 8. <u>토양·지하수수질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u> 9. <u>토양·지하수수질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연구</u> 10. <u>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에 관한 조사·연구</u>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① <u>교통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원·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u> ② <u>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 1. <u>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u> 2. <u>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u>	
---	--

<삭 제>

3. <u>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u> 4. <u>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연구</u> 5. <u>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u> 6. <u>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u> 7. <u>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u> 8. <u>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u> 9. <u>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인증에 관한 사항</u> 10. <u>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의 수리검사 및 결함확인검사</u> 11. <u>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및 연료의 품질등급 검사</u> 제19조(물환경연구소) ① <u>4대강물환경연구소로 한강물환경연구소·낙동강물환경연구소·금강물환경연구소 및 영산강물환경</u>	
--	--

<삭 제>

연구소를 두되, 각 소장은 공업
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
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
관으로 보한다.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
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
조사

3. 유역 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연구

4. 유역 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
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
·연구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
생물 분포의 조사·연구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
에 관한 기술개발

8.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을 위
한 하천특성 및 유량 조사·
연구

9. 수계의 환경생태에 대한 홍
보 및 교육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11.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교육
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신설>

제23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
한다.

② -----
----- 과학기술서기관·서
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
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
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다.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무관·방송통신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6의3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삭 제>	환경부령 제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4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4의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으로 본다.	환경부령 제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삭 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 ⑤ (생략) ⑥ 별표 16의3에 따른 정원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29</u>	<u>632</u>	+3
·	·	·	
·	·	·	
일반직계	<u>623</u>	<u>626</u>	+3
고위공무원단	<u>15</u>	<u>16</u>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0</u>	<u>11</u>	+1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6</u>	<u>25</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27</u>	<u>29</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 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94</u>	<u>96</u>	+2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 ·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u>31</u>	<u>29</u>	-2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29	632	+3
일반직 계	623	626	+3
고위공무원단	15	16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11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6	25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7	29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9	111	+2
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31	29	-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36</u>	<u>35</u>	-1
·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기상 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30</u>	<u>34</u>	+4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8</u>	<u>7</u>	-1
공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9</u>	<u>7</u>	-2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37</u>	<u>36</u>	-1
·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기상 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32</u>	<u>36</u>	+4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8</u>	<u>7</u>	-1
공업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9</u>	<u>7</u>	-2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 <u><신 설></u>	· · <u>1</u>	+1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신 설></u>	<u>2</u>	+2
고위공무원단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u> <u>2</u>	<u><삭 제></u> <u><삭 제></u>	-1 -2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 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 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4</u>	· · <u>5</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	.	.	
---	---	---	--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732</u>	<u>733</u>	+1
일반직 계	<u>732</u>	<u>733</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28</u>	<u>30</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127</u>	<u>125</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101</u>	<u>102</u>	+1
·	·	·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733</u>	<u>734</u>	+1
일반직 계	<u>733</u>	<u>734</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27</u>	<u>29</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130</u>	<u>128</u>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104</u>	<u>105</u>	+1
·	·	·	

·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47	346	-1
일반직 계	347	346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11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57	56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4	53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49	348	-1
일반직 계	349	348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0	59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75	177	+2
일반직 계	175	177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5	+1
·	·	·	
·	·	·	
행정주사	3	2	-1
·	·	·	
·	·	·	
시설주사보	6	8	+2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75	177	+2
일반직 계	175	177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5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 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통계사무 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	<삭 제>	-1
·	·	·	
·	·	·	
시설주사보	6	8	+2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8</u>	+8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심사관)</u>	<u>8</u>	<u><삭 제></u>	-8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의3]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17</u>	<u>119</u>	+2
일반직 계	<u>117</u>	<u>119</u>	+2
·	·	·	
·	·	·	
4급 이하	<u>114</u>	<u>116</u>	+2